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80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김대식 · 이현승 · 고동진
김용태 · 송석준 · 광규택
조정훈 · 김상훈 · 김예지
김선교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를 “영유아의 교육·보육 정책 및 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u> 2. <u>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u> <u><신 설></u> 3. ~ 10. (생 략) ③ ~ ⑦ (생 략)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 -----. 1. <u>영유아의 교육·보육 정책 및 사업에</u> ----- ----- 2. <u>교육·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u> 3. <u>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u> 4. ~ 11. (현행 제3호부터 제10까지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